

배포용

---

#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허가 매뉴얼

---

2020. 8.



금 융 감 독 원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매뉴얼」 이용 안내

본 자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허가 신청인의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허가의 개요, 절차, 요건 및 심사기준, 신청서 작성요령 순으로 기술하여 허가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에 수록된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업무 참고용 자료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 주요 법령에 대한 약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법” 또는 “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지배구조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규정”

#### ◆ 금융감독원 담당 부서

- 저축은행감독국 신용정보팀
- 허가요건 일반 : 02-3145-6784~5, mydata@fss.or.kr)
- 물적설비 요건 : 02-3145-6780, mydata@fss.or.kr)

# 목 차

<b>I. 개 요</b> .....	<b>1</b>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업무 .....	1
2. 허가 대상 .....	2
<b>II. 허가 절차</b> .....	<b>3</b>
1. 개 요 .....	4
2. 예비허가 .....	4
3. 본 허가 .....	6
<b>III. 허가요건 및 심사기준</b> .....	<b>7</b>
1. 허가요건 구성 .....	7
2. 심사기준 .....	8
① 자본금 요건 .....	8
② 물적 요건 .....	8
③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	11
④ 대주주 적격성 요건 .....	13
⑤ 임원자격 요건 .....	14
⑥ 전문성 요건 .....	15
<b>IV. 허가신청서 작성 요령</b> .....	<b>16</b>
[참고1] 허가신청서 작성례 .....	21
[참고2] 확인서 양식 .....	30

# I. 개 요

##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업무

### 1 고유업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할 수 있게 하는 업무(법 제2조제9호의2, 시행령 제2조제21항)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고유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조)

### 2 겸영 및 부수업무

#### □ 겸영업무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자문·투자일임, 금융상품자문업, 대출의 중개·주선, 전자금융업, 신용정보업 등

※ 비금융업무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 자유로운 겸영 허용

#### □ 부수업무

- 데이터 분석·컨설팅, 정보제작 업무, 정보관련 권리(예:프로파일링 대응권) 대리행사 업무 등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 연수·교육·출판, 금융상품 광고·홍보, 본인인증 및 식별확인 업무 등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에 신고해야 함(법 제11조, 제11조의2)

## 2 허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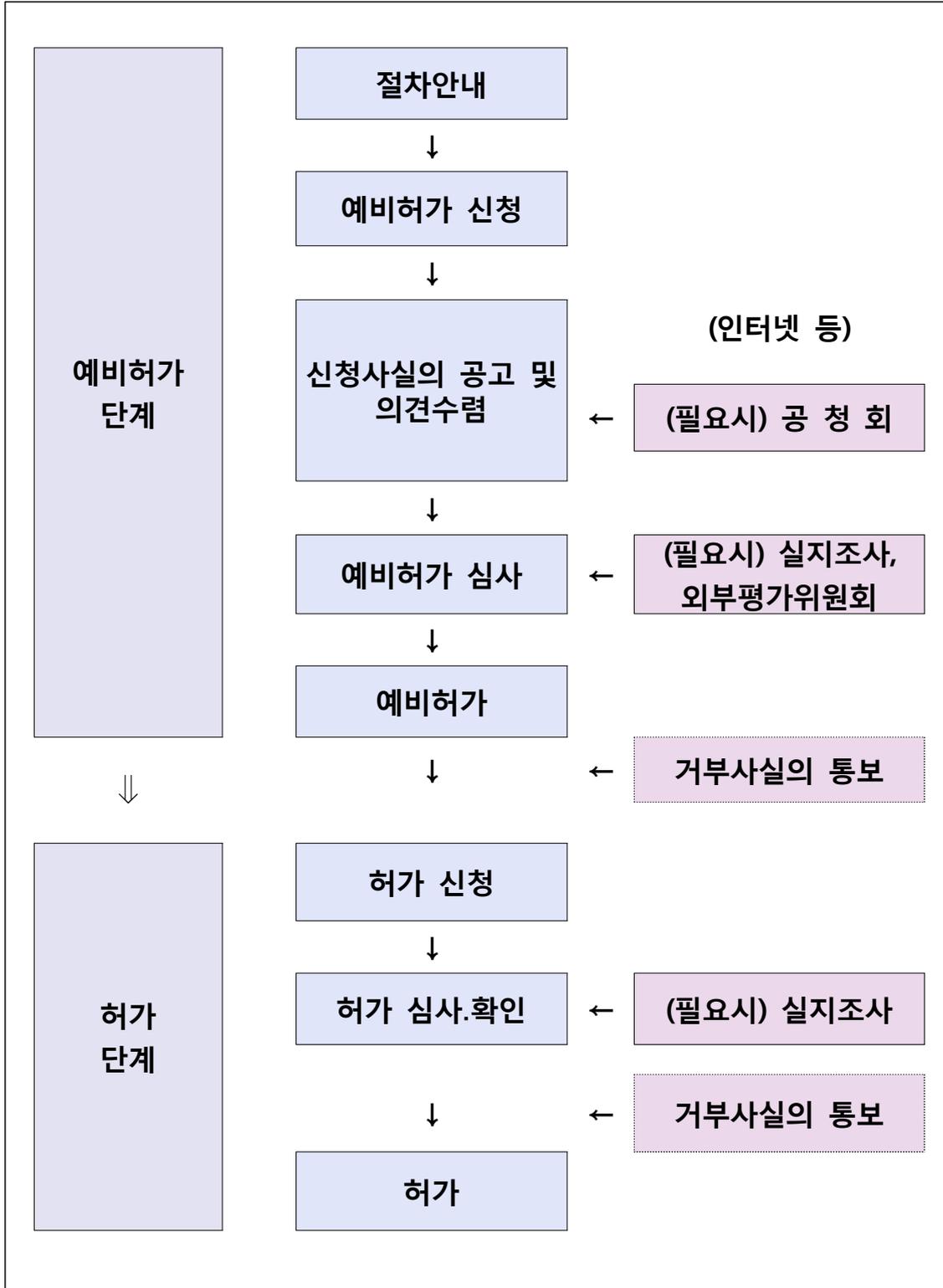
- '20.8.5.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이 허가제로 운영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고유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법 시행 전부터 영위하고 있던 회사는 '21.2.5.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고 영업할 경우 무허가 영업에 해당
- 수집하는 정보가 개인신용정보가 아니거나, 수집된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 대상이 아님

###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의 예시(허가 불필요)

- ①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 (ㄱ)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개인 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ㄴ)기업신용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금융회사 등)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 \* 예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신용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등 없이) 직접 제출받았거나, 금융거래과정에서 직접 생성하게 된 개인신용정보만을 해당 신용 정보주체에게 조회·열람 등 제공하는 행위
- ③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나,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열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 \* 예 :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이를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열람 등 제공하지 않고 내부 신용 평가 등에만 활용하는 경우
- ④ 개인신용정보를 저장·접근하지 못하는 단순 가계부 어플 개발
  - \* 정보주체가 직접 입력한 개인신용정보를 단순 관리할 수 있는 UI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가 금융회사 등 상거래기업의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정보 주체 이외에는 입력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접근·조회할 수 없는 경우
- ⑤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

## II. 허가 절차

### < 허가절차 흐름도 >



## 1 개요

-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영위 허가는 예비 허가와 본 허가로 구분
  -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도 등 구조조정,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예비허가 신청시 허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2 예비허가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의 심사기간은 2개월이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됨

### ① 예비허가의 신청

- 예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허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접수(감독규정 <별표1의2>의 구비서류 첨부)

### ②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 수렴

- 금융위는 예비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 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 금융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사실의 공고와는 별도로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위는 위 내용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토록 할 수 있음

- 금융위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

### ③ 예비허가 신청내용의 심사

- 금융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허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
- 금융감독원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해 이해관계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및 실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④ 예비허가 결정 및 통지

- 금융위는 신청인의 예비허가 신청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
- 예비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예비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함
- 예비허가는 허가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허가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여지는 허가권자의 의사표시이며, 허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 3

## 본 허가

□ 신용정보업 본 허가의 심사기간은 3개월(예비허가를 거친 경우 1개월)이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됨

### ① 허가 신청서의 접수

- 신청인은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이후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접수(감독규정 <별표1의2>의 구비서류 첨부)

### ② 허가

- 금융위는 신청인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며 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 및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금융감독원장은 허가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며,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금융위는 예비허가 또는 허가 심사시 필요한 보완서류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위는 예비허가 또는 허가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확인함
-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법 제14조제1항제10호)

### Ⅲ. 허가요건 및 심사기준

#### 1 허가요건 구성

요건	개요	근거법규		
		법	시행령	규정
자본금 요건	-최소 자본금 5억원	§6② 1호의4		
물적 요건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보안체계의 적정성	§6① 1호	§6① 5호, ② 2호	<별표2>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수입·지출 전망의 타당성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 체계의 사업계획 추진 적합성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 체계의 이해상충 방지 등 건전 영업 수행 적합성	§6① 2호	§6③	
대주주 적격성 요건	-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 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6① 3호	§6④ <별표1의2>	§7 <별표2의2>
임원자격 요건	-선임(예정) 임원이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	§6① 3호의2, §22①, 지배구조법 §5	지배구조법 시행령 §7	
전문성 요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무 수행에 충분한 전문성	§6① 4호		

## 2 심사 기준

### 1 자본금 요건

- (허가요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함
- (점검항목) 자본금 납입 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 (심사방법) 등기부 및 재무제표,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확인

### 2 물적 요건

- (허가요건 및 점검항목)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2])를 모두 갖춰야 함

점검항목(규정 <별표 2의 허가요건>)	제출서류(예시)
<b>1. 시스템 구성</b>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가. DB서버, 통신서버, 웹서버, 보안서버 등 서버 시스템 나. 저장장치,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 다. 해당업무 영위를 위한 각종 S/W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버 등 시스템 자산 목록(DB/WAS/WEB 서버, 통신서버, 보안서버 등)</li> <li>■ 저장장치,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 목록</li> <li>■ 소프트웨어 자산 목록(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위한 웹/모바일 어플리케이션, WEB/WAS/DBMS 어플리케이션 등 포함)</li> <li>■ 정보시스템 구성도(본인신용정보관리 업무 관련 시스템을 표기)</li> </ul>
2. 백업 및 복구시스템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자료 백업, 복구를 위한 솔루션 및 시스템 자산목록</li> <li>■ 백업관리지침, 백업계획서, 백업관리대장, 전산자료 반출·입대장</li> <li>■ 백업 및 소산 현황, 백업 및 복구 테스트 결과</li> <li>■ 정보시스템 구성도 (백업 및 복구 관련 시스템을 표기)</li> </ul>

점검항목(규정 <별표 2의 허가요건>)	제출서류(예시)
3. 내외부 네트워킹 등 통신시스템 구성 등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장비 및 통신시스템 자산 목록, 정보통신망 구성도(본인신용정보관리 업무 관련 라우터, 스위치, 전용선 및 통신회선 이중화 여부 등을 표기)</li> </ul>
<b>2. 보안체계</b>	
1.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프로그램,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탐지 및 백신프로그램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보호시스템 자산목록(FW, WAF, IPS, IDS, Anti-DDoS, 매패제어, 백신 등), 네트워크보안지침, PC보안지침, 정보보호시스템 운영현황</li> <li>■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정보보호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표기)</li> </ul>
2.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위·수탁 계약서,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 계약서(SLA 협약서 등)</li> <li>- 업무 위탁 또는 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수탁 계약서 등에 하단 별표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li> <li>■ 보안관리약정서, 보안서약서, 수탁자 보안관리계획 및 보안관리방안</li> </ul>
3. 직무분리 기준을 수립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구성도, 직무분리기준, 업무분장표 (본인신용정보관리 업무 관련 임직원)</li> </ul>
4.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밀번호 관리 규정 및 지침, 비밀번호 생성 규칙, 비밀번호 규칙 적용 화면 (PC 등 단말기, 서버 등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li> </ul>
5. 비상계획, 재해복구 훈련 실시 체계를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P/DRP지침, 업무연속성 계획(BCP), 재해복구 계획(DRP), 비상대응조직 구성·운영 현황</li> <li>■ 비상계획, 재해복구훈련 실시 계획 및 훈련 실시 결과</li> </ul>
6. 서버, 단말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보안지침, PC보안지침, 사용자 (고객 등 이용자) 보안지침</li> <li>■ 서버보안시스템/PC보안솔루션 자산목록, 시스템 구성도(서버접근제어, DB접근제어, NAC, DRM, DLP 등 서버, 단말 관련 정보보호시스템을 표기)</li> <li>■ 서버, 단말 등에 대한 접근통제현황 (사용자, 이용자 접속시 본인 인증수단 포함)</li> </ul>

점검항목(규정 <별표 2의 허가요건>)	제출서류(예시)
7.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보안지침, 전산실 및 DR센터 등 보호구역(통제구역/제한구역 등) 운영현황</li> <li>■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보호구역 출입통제 절차, 출입관리대장</li> </ul>
8.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접속기록 유지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처리시스템 자산목록(시스템별 접속기록 유무 및 접속기록 항목 표기), 정보자산 위험평가서</li> <li>■ 로그관리지침, 정보처리시스템별 접속기록 관리 현황, 시스템별 접속기록 로그 샘플</li> </ul>
9.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같은 규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제8항을 준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업무망, 인터넷망 등 네트워크 구간별로 망연계 솔루션 등 망분리 관련 장비를 표기)</li> <li>■ 단말기 목록(업무용 단말기, 시스템 접속용 단말기 포함), 단말기 보안지침, 무선망 보안대책(WIPS 설치현황 등)</li> <li>■ 망분리 구축·운영현황(망분리 대상 및 범위, 망분리 방식 등 상세설명 포함)</li> </ul>
10. 안전한 물리적 보안설비(통신회선 이중화, CCTV 등)를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보안지침, 전산설비 배치도(항온항습기/UPS, 하론소화기 등 전산설비 보호장치 설치 현황, CCTV 설치 현황, 통신회선 이중화 현황, 화재감지기 등)</li> <li>■ 전산설비 보안대책(제한구역, 통제구역 등 보호구역 위주로 작성)</li> </ul>
11. 안전한 백업대책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업관리지침, 백업 및 복구 계획서, 백업관리대장, 자산 반출·입대장</li> <li>■ 백업 및 소산 현황, 백업 및 복구 테스트 결과, 주요 데이터 백업 현황</li> </ul>
12. 안전한 데이터 암호화 처리방침 및 암호처리 시스템 구축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호처리시스템 목록(DRM, DB암호화, VPN, E2E 등), 암호화 관리지침, 암호키 관리지침, 암호키 관리대장</li> <li>■ 데이터 암호화 처리 현황(암호화 대상 및 방식, 적용 암호화 알고리즘, 암호처리 시스템 운영현황 등)</li> </ul>
13. 외부에서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접속 및 인증수단(VPN 등)을 적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사용자 보안지침, 외부 사용자 시스템 접속 절차 및 인증 절차(인증 방법, 인증수단, 통신구간 암호화 등 포함)</li> <li>■ 외부사용자 원격접속계정 및 접근권한 부여현황, 외부사용자 업무분장표(원격접속 대상자를 모두 포함)</li> </ul>

**※ 업무 위탁 또는 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위수탁계약서 등에 포함될 사항**  
(2. 보안체계의 2호 요건, 신용정보법 §17 등 관련)

1. 위탁 계약서 등에 포함될 주요 기재사항
1.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26①에 관한 사항
2.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의 방지 및 안전한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수탁자의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 실시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21 관련 「별표4」 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 중 '3.수집된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아래 기재된 사항 1)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이용 목적 2) 제공된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앞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3) 제공된 신용정보의 이용자 제한 및 전담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신용정보 송수신시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5) 신용정보의 사용·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반납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7)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8) 신용정보 처리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9)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1)~10)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감독당국 또는 내외부 감사인의 조사·접근(허가 실시조사, 현장방문, 현장검사 등 포함) 수용 의무
5. 그 밖에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등 업무 위탁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계약서에 반영해야할 사항

2. 제출 서류
1. 위탁계약서 사본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시)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관련) 1)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른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결과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 평가 결과 3)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

- (심사방법)** IT 및 정보보호 관련 내규 및 절차 마련 여부, 본인 신용정보관리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구성 및 보안체계 구축 적정성 등을 서면심사를 통해 점검하고,
-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가 실제 시스템 구성 및 보안체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지조사에서 확인

### 3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 (허가요건 및 점검항목) 사업계획의 수입·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
  -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 등 건전한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해야 함(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

허가요건	점검항목
<p><b>1. 수입·지출 전망의 타당성</b> (시행령 §6③ 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및 서비스의 경쟁력 및 혁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다양성을 제공하는 등 정보주체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신용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li> <li>- 서비스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이 다른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서비스에 비해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li> <li>- 겸영업무 영위를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겸영업무의 영위에 법적·사실적 제약이 없는지 여부</li> </ul> </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개시 후 수입·지출 전망의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장 전망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가입자 확보 등 영업 시나리오를 설정</li> <li>- 영업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향후 2년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추정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작성시 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투자·인력충원·마케팅 등 초비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li> <li>☑ 손익 추정결과를 추정 재무제표에 일관성 있게 반영</li> <li>☑ 사업계획과 추정재무제표의 내용이 일치하고, 추정 영업손익·비용의 증감이 일관성을 유지</li> <li>☑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 규제준수 비용을 반영</li> </ul> </div>

허가요건	점검항목
<p><b>2.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의 사업계획 추진 적합성</b> (시행령 §6③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 확보 방안 및 영업과의 연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li> <li>-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법 §22의9 ③,④)에 따라 신용정보의 수집 및 통합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운용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li> </ul> </li> </ul> <p>* 데이터 API 구축('21.8월) 이전 신청자는 해당 업무체계에 대한 구축계획을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주체가 접근할 수 있는 고유한 서비스 채널 운영 여부(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li> </ul>
<p><b>3.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의 건전경영 수행 적합성</b> (시행령 §6③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내용 및 방법이 관련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예)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 §22의9①에 따른 행위규칙 준수에 적합한지 여부 등</li> <li>■ 임직원의 법규 준수, 위험관리 및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여부* (예)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 등 준법 전담조직, 내부통제기준 등</li> <li>■ 적정한 신용정보 보호체계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보호·관리인 지정 등 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적정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li> <li>- 사용자 100만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의 경우 금융보안원의 보안 관제 가입 또는 가입예정 여부(사용자 100만명 이상 확보시 1년 내 가입)</li> <li>- 정보보호 부문 인력 및 예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여부</li> </ul> </li> <li>■ 금융소비자를 위한 충분한 보호체계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방지 체계 마련 여부(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추천·권유 알고리즘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포함)</li> <li>- 본업 및 겸영업무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민원 등에 대한 적절한 접수·대응 체계 구비 여부</li> <li>- 신용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응체계 구비 여부 (예) 피해현황 파악, 감독당국 보고, 피해 확산 방지조치 등</li> </ul> </li> </ul>

**(심사방법)** 사업계획서, 예상 수지계산서 등을 통해 위험관리,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

## 4 대주주 적격성 요건

□ (심사대상) 신청인의 대주주(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 ① 최대주주(법 제2조제18호가목)

-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가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② 주요주주(법 제2조제18호나목)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을 소유한 자
- 임원(이사, 감사, 집행임원)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 (심사요건) 심사대상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함

- 심사대상의 법적 실체(금융기관, 내국법인, 내국인, 외국법인, PEF 또는 SPC인 경우)에 따라 각각의 심사요건을 규정

\* 세부 심사요건은 시행령 <별표1의2>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확인

- (심사방법)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및 확인서, 국내외 소관 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확인

\* 검찰청, 경찰청, 한국신용정보원, 예금보험공사 등 국내 기관과 해외 본국 감독기관 등

## 5 임원자격 요건

- (심사요건) 임원\*이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이사, 감사, 집행임원(법 제2조 제18호 나목)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지배구조법 제2조제7호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사 또는 감사위원</li> <li>2.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행정처분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li> <li>3.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li> <li>4. 각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li> </ol>

## 결격사유

- ⑦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자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 (심사방법) 임원 및 임원 예정자의 결격 여부를 사업계획서, 경력증명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

## 6 전문성 요건

- (심사요건) 신용정보 활용·보호 및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
- (심사기준) 신용조회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금융업 및 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한 경험이 있거나,
- 관련 전문인력 고용 등을 통해 신용정보 산업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소명되는지 여부를 심사

## IV. 허가신청서 작성 요령

### 1 허가신청서 양식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예비허가,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90일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법인의 목적				
허가받고자 하는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없음
2. 재무제표				
3.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4. 그 밖에 별표 1의2의 해당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인력에 관한 사항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계	
	그밖의 시설	

## 2 허가신청서 항목별 작성요령

- 성명(대표자) : 신청인 회사의 대표자
- 상호 또는 명칭 : 신청인 회사의 명칭
-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신청인 회사의 소재지를 기재
- 법인의 목적 : 정관상 법인의 목적 등 기재
- 업무의 종류 : 고유업무 및 부수업무를 기재\*

\* (기재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등
- 인력에 관한 사항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 채용 직원 수
-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 체계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수행을 위해 도입한 전산 시스템에 대한 설명, 회사의 전산 체계 등을 기재\*

\* 예비허가 신청시에는 설비 등의 구축 계획을 기재해도 무방하나, 본허가 전까지는 실제로 구축한 물적 설비 현황을 기재

### **[설립예정 회사]**

- (신청인) 발기인(전원 또는 대표) 또는 법률대리인이 회사를 대리하여 신청
- (상호, 본점 소재지) 상호는 가칭으로 기재, 본점 소재지 등은 향후 임대차 계약 체결 예정 장소 등을 기재
- (정관) 향후 법인 설립시 사용할 정관(案)을 제출

### 3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및 작성요령

◆ 감독규정 별표 1의2에 열거된 첨부서류 중 주요 서류에 대한 작성 요령 및 예시임

#### □ 사업계획서

- 허가신청의 개요, 물적설비 현황, 사업계획, 심사대상 대주주 현황 등 허가 심사 요건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작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심사를 위한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는 필요시 별도 자료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본문에는 요약 내용을 기술

☞ 상세한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는 <참고 1> 자료 참조

#### □ 자본금 납입에 관한 서류

- 자본금 납입증빙 : 주금납입증명서, 주금납입통장 사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납입은행이 발급한 증명서 등

#### □ 임직원에 관한 서류\*

\* 회사 설립 전인 경우 : 임원선임 예정자와의 협의를 거쳐 예정자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되, 예비허가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함께 제출

- 임원의 이력서 : 사실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
- 직원의 상시고용을 확인하는 서류 : 성명, 직위, 부서명 등 기재 후 직원의 상시고용 여부에 대해 확인

- 임직원이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필요시 확인서 제출로 대체)
  - 신원조회회보서 : 본적지 구청 등에 법인명의 공문발송을 통해 신원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

☞ 확인서 : <참고2> 확인서 서식 참조

## □ 내부관리규정에 관한 서류

-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내부관리규정
  1. 규정 제23조의3 제2항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규정
  2. 규정 <별표3>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3.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행사 철회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
  4. 1호 내지 3호의 내부관리규정 외에 법 제22조의9의 행위 규칙 준수를 위한 내부관리규정
  5.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및 수행하는 업무
  6. 신용정보처리 위탁의 기준
  7. 그 밖에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적인 절차
- 기타 회계처리·감사·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현황 및 규정 제출

### ※ 구비서류 관련 공통사항

- ◆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및 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됨

## □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감독규정 별표 1의2)

예비허가	(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신청서</li> <li>- 정관(안)</li> <li>-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li> <li>-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이사록) 사본</li> <li>-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자금조달 계획</li> <li>- 출자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출자확약서(출자비율 5%미만인 개인출자자는 제외)</li> <li>- 출자자의 출자자금 조달계획서</li> <li>- 출자자가 금융회사인 경우는 당해 금융회사 인허가권자의 인허가서 사본 또는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및 당해 금융회사의 일반현황</li> <li>- 출자자가(당해 법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출자자 중 최대 출자자에 한함)가 일반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li> </ul> <p>* 신청인이 이미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상기 첨부서류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 경우)</li> <li>- 주요출자자가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류</li> <li>- 인력 및 물적시설(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물적시설 포함)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 허가 신청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li> <li>- 임원(예정자 포함)이력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신청서</li> <li>-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li> <li>- 재무제표</li> <li>-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li> <li>-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li> <li>-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이사록) 사본</li> <li>- 출자자(또는 주주) 관계 확인서류</li> <li>- 자본금 납입증명 서류</li> <li>- 외국인출자자인 경우 외국인의 출자가 「외국환거래법」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li> <li>-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 경우)</li> <li>- 주요출자자가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류</li> <li>- 물적시설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서류</li> <li>- 허가 신청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자료</li> <li>- 임직원에 관한 서류</li> <li>- 임원의 이력서</li> <li>- 직원의 상시고용을 확인하는 서류</li> <li>- 법 제22조의8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필요시 이를 확인하는 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li> <li>-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li> <li>- 회계처리·감사·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li> <li>- 예비허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li> </ul>

# 참고1

## 허가신청서 작성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예비허가,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90일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김본인	주민등록번호	700101-1234567
	상호 또는 명칭	주식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 (전화번호) 02-4444-5555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10억원
법인의 목적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함 1. 개인신용분석 및 평가 용역제공 업무 2. 전산시설을 이용한 정보처리 및 용역제공 업무 등			
허가받고자 하는 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8월 5일 신청인 주식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인)				
금융위원장 귀하				수수료
※ 구비서류				없음
1.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2. 재무제표				
3.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4. 그 밖에 별표 1의2의 해당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김본인(700101-1234567) 감사 이신용(700101-1234568) 이사 박관리(700101-1234569) 외 3명		
인력에 관한 사항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담당직원 20명 (예비허가 취득 후 채용예정)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계	서버시스템, 백업 및 복구시스템, 통신 시스템 등(상세 목록은 별첨)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체계 (상세 목록은 별첨)		
	그밖의 시설	사무실 1개소, 기타 집기		

# 1. 신청 개요

회사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문 :</li> <li>◆ 영문 :</li> </ul>		
소재지			
현재 영위중인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허가받고자 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허가신청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자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임원구성	직위	성명	주요이력
최대주주			
주주구성 <sup>1)</sup>	주주명	지분율	구분 <sup>2)</sup>

- 주1) 대주주요건 심사대상 및 5% 이상은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고 나머지는 통합하여 기타로 표시  
 2)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또는 투자목적회사'로 구분  
 3) 칸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삽입 또는 삭제하여 적절하게 조정

## 2. 자본금 현황

---

□ 자본금(202×.××.××. 신청일 현재) : 억원

○ 납입자금의 조성 방법

### 3. 물적 설비 현황

\* 허가 심사 세부 요건 별로 사업계획서 내 해당 내용, 관련 규정, 시스템 구성 및 보안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적절히 요약하여 핵심적 내용을 표 안에 기술 (내용이 많을 경우 추가 페이지 작성가능)

구성	> 시스템 구성
세부 요건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가. DB서버, 통신서버, 웹서버, 보안서버 등 서버 시스템 나. 저장장치,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 다. 해당업무 영위를 위한 각종 S/W 프로그램
관련 내규	<input type="checkbox"/> 관련 내부규정 및 지침명 - 관련 조항 및 내용
현황	<input type="checkbox"/> 세부 요건 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서술하고, 관련 시스템 구성, 보안체계 구축 현황 등을 첨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width: 100%;"></div> <p style="text-align: center;">&lt;관련 시스템 화면&gt;</p>

## 4. 사업계획 타당성

(1) 수입·지출 전망의 타당성	관련 내용
<p>① 당사 서비스의 경쟁력 및 혁신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의 차별성과 비교 우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겸영업무 영위 예정인 경우 겸업에 필요한 등록 및 허가 취득계획을 포함</li> </ul> </li> <li>■ 당해 서비스가 소비자 편의 및 데이터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점</li> </ul> <p>(별도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관련 내용 페이지를 부기, 이하 항목에서 동일)</p>
<p>② 영업 개시 이후 수지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상황에 대한 가정을 합리적 근거와 함께 제시</li> <li>■ 제시한 시장상황 하에서의 영업 시나리오에 따라 손익을 추정</li> <li>■ 손익 추정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추정 재무제표에 손익 추정결과를 일관되게 반영</li> </ul>
(2)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체계의 사업 계획 추진 적합성	관련 내용
<p>① 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 확보 및 영업과의 연계계획의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li>■ 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의 구체적 방법을 포함한 업무 흐름을 서술</li> </ul>
<p>② 서비스 채널 운영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서비스 채널 운영 계획</li> <li>■ 메뉴 구성 및 UI, 가입 및 탈퇴 방법 등</li> </ul>

(3)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체계의 건전 경영 수행 적합성	관련 내용
① 영업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적 내용을 서술하고,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술</li> </ul>
② 내부통제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통제 조직 및 관련 내규 등의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③ 신용정보 보호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대책 등의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④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방지 체계 및 민원처리 프로세스 등 소비자보호 체계의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 5. 심사대상 대주주 현황

대주주현황	주주명	구분 <sup>1)</sup>	의결권 있는 주식수	비율(%)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예) 배우자, 자녀 등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사실상 지배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주요주주				

주 1)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또는 투자 목적회사', '외국인' 등으로 구분

※ 필요시 대주주 등 신청인의 지배관계를 나타내는 도표 첨부

## 6. 임원 현황

구 분	임원1	임원2	임원3	임원4	...
성명					
생년					
직위					
등기여부					
담당업무					
학력					
주요 경력					
상근 여부 <sup>1)</sup>					
타회사 겸직 여부 <sup>2)</sup>					
주주와의 관계	주주명				
	관계 <sup>3)</sup>				
결격여부 자체점검 결과 <sup>4)</sup>					

주1) 상근, 비상근,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주2) 겸직회사명 및 직위를 기재(겸직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주3) 대주주적격 심사 대상 대주주와 시행령 제2조 제2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본인', '특수관계자',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주4) 지배구조법 제5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적정 여부

## 7. 허가 신청 업무에 대한 전문성

신용정보 활용·보호 및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	관련 내용
<p>① 인력 보유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합한 경력과 지식을 갖춘 인력 보유 등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② 관련 업무 영위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허가 신청 전 신청인이 영위한 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 등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가. 임원 확인서**

임원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 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지배구조법 제2조제7호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사 또는 감사위원</li> <li>2.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행정처분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li> <li>3.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li> <li>4. 각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li> </ol>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자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본인은 상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각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 나. 대주주 확인서

### (1) 금융기관

####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기준이 없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금융기관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7항제2호다목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 진행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허가 심사 진행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고지할 것을 확인함	

당 사는 상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7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대표이사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2) 기금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 진행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허가 심사 진행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고지할 것을 확인함	

당 기금은 상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7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기관장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3) 금융기관·기금 이외의 내국법인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당해법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7항제2호다목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 진행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허가 심사 진행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고지할 것을 확인함	

당 법인은 상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7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기관장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4) 내국인으로서 개인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각호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료 등록된 사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소득재원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 진행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허가 심사 진행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고지할 것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7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5) 외국 법인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 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 진행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허가 심사 진행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고지할 것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7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